

## 1990年度決算檢查意見書

○ 결산 검사 위원

— 대표위원 : 김 한 민 의원

— 위 원 : 박 남 서 의원

— 위 원 : 신 용 수 공인회계사

### 1. 총 평

'90년도 남구청 총세입 48,929,096천원,

세출 40,354,065천원을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다소

소홀히 처리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직접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 2. 세입세출총괄

○ 세입 예산액 ————— 46,835,262천원

— 일반 회계 : 44,606,664천원

— 특별 회계 : 2,228,598천원

○ 세출 예산액 ————— 46,835,262천원

— 일반 회계 : 44,606,664천원

— 특별 회계 : 2,228,598천원

○ 이월 예산액 ————— 2,140,076천원

— 일반 회계 : 2,140,076천원

— 특별 회계 : 0

○ 불용 예산액 ————— 4,341,120천원

— 일반 회계 : 4,253,960천원

— 특별 회계 : 87,160천원

○ 공유재산 : 689,431천원,

○ 물 품 : 425,337천원

○ 채 권 액 : 1,975,442천원

○ 채무액 : 2,185,822천원

### 3. 세입 예산분야

#### 1) 세입 예산의 편성 부적절

지방세 징수 전망 책정에 있어 예산산 계상액은 46,835,262천원으로 전망하였으나 1990년도 실제 징수액은 48,929,096천원으로 순잉여금 2,093,834천원이 '91년도로 이월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책정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징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제 징수가능 재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재원을 주민 숙원사업 등 민생 안정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 관리가 요구됨.

#### 2) 채권 채무의 관리 소홀

'90년도 채권은 1,975,442천원, 채무는 2,185,822천원으로써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을 수시로 기록 유지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체적으로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채무 발생, 소멸 시효는 총괄 채무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재무회계규칙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납부이행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독촉, 압류, 강제 징수 등 적절한 행정 조치의 결여로 체납액 누증을 초래하고 있음.

## 3)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징 수 비 율
계	2,147,400	435,788	82,814	1,628,798	20.3%
지 방 세	85,972	52,094	17,965	16,013	60.6%
세 외 수입	2,061,428	383,694	64,949	1,612,785	18.6%

-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 원인 분석, 특별 징수 대책 강구 등, 체납세 수납대책을 정확히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체납액 징수 활동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는바, 행방 불명자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결손 처분할 것이며,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우선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행정력의 집중이 요구됨.

## 4. 세출예산분야

## 1) 세출 예산의 불용액 처리

'90년도 불용액 총액은 4,341,120천원으로 예산액의 9.26%인바, 이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 예산 계상액 전액이 그대로 불용처리되거나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은 이는 당초 예산 편성이 충분한 사업 계획이 검토되지 않는 결과로 예산 편성의 소홀한 처사로 사료됨.

## 2) 사고 이월 사업

'90년도 총사고이월 사업은 23건에 1,616,536천원으로써 이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연초부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하반기에 가서 착수하므로써 회계년도내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바, 이는 행정 관청이 소홀히 처리한 결과로 사료됨.

## 3) 명시 이월 사업

'90년도 예산 사업중 '91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6건에 523,540천원으로써 이는 회계년도내에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충분한 사전 사업 계획없이 '90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장시간 방치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는 물론 이로 인해 타사업을 못하게 한 요인이 되는 바, 이는 행정 기관이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가 결여된 처사로 사료됨.

## 4) 예비비 지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바, '90년도 예비비 사용 내용은 청소 인부 처우개선비 7,738천원과 수영천 호안공사 55,000천원등 62,738천원을 사용한 바, 이는 당초에 예측했으면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당초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당초 예비비 책정 목적대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